

2014. 8. 25. 제14차 전원위원회 의결
(2014. 7. 31. 상임위원회 심의)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 2015년 ~ 2017년 >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제1장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추진 경과	1
3.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체계 및 정의	2
제2장 인권환경의 변화와 제4기 추진방향	5
1.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응	5
2. 조사구제·인권교육 수요에 대한 전략적 접근	6
3.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7
4. 인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8
5.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9
제3장 제4기 계획의 주요 특징	10
1. 비전의 유지, 사명의 가치지향성 강화	10
2. 기능과 대상을 포괄한 전략목표의 수립	10
3.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핵심추진방향의 설정	11
4. 인권의 지역화 및 전국적 확산 추진	11
5. 새로운 인권의제 및 영역의 발굴	12
6. 성과목표의 체계적인 관리	13

제4장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내용	14
1. 비전과 사명	14
2. 전략목표·핵심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14
3. 특별사업	19
4. 기획사업	20
5. 추진기반 및 추진절차	20
6.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따른 세부추진내용	22
· 전략목표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22
· 전략목표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34
· 전략목표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49
· 전략목표Ⅳ.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61
· 특별사업(북한인권 개선)	73
· 기획사업(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75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77
7.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1(개요)	81
8.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2(종합: 단위과제 포함)	82
9.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3(세부추진과제 포함)	83

【부록】

1. 제1기, 제2기,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	91
2.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 명단	95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 2015년 ~ 2017년 >

제1장 개요

1. 수립 배경

- 위원회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수행할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하여 왔으며, 제1기(2006년~2008년), 제2기(2009년~2011년), 제3기(2012년~2014년) 계획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차기 계획 필요성 제기
- 국내외의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업무계획 수립 추진

2. 추진 경과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구성(3.5.) 및 전원위원회 보고(3.24.)
 -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원 2명, 외부자문위원 15명 및 사무처 직원 15명, 간사 2명으로 추진단 구성 및 활동
 - 계획안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사무처 실무추진단 운영
- 인권증진계획추진단 전체회의: 3회(3.25./4.22./6.17.)
- 실무추진단 회의: 5회(3.12./3.19./4.2./4.9./6.10.)
- 국민참여 의견요청(5.16.~6.15.)
 - 홈페이지 게시, 전자메일 발송(위원회 '정책고객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2,000여 명 및 230개 단체)
- 주요 인권시민사회단체간담회 개최: 11개 단체 참여(5.29.)
- 정책자문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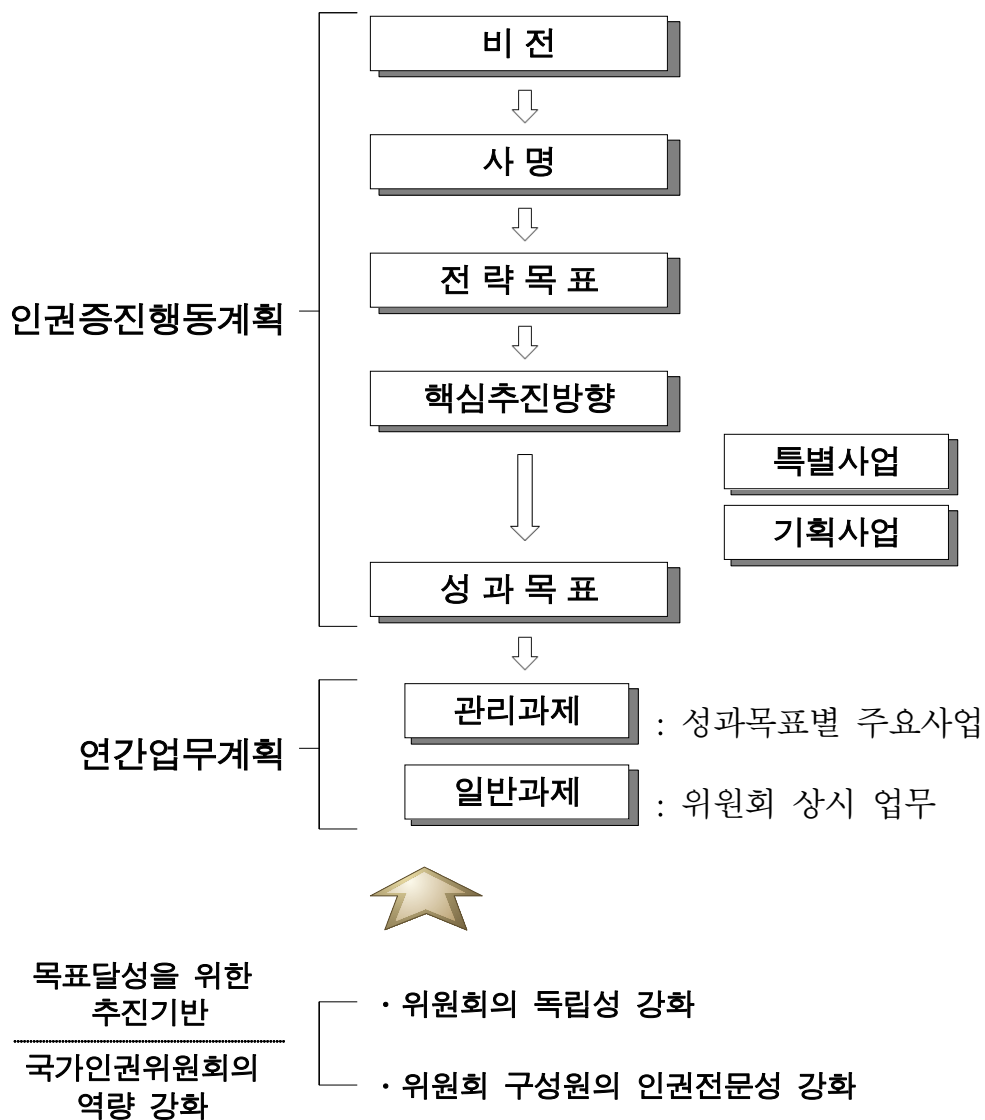
○ 기타 의견수렴

- 사무총장 주재 간부회의 3회, 각 부서 의견수렴 2회 등

○ 상임위원회 심의(7.31.) 및 전원위원회 의결(8.25.)

3.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체계 및 정의

□ 단계별 체계 구성



□ 체계 정의

○ 비전(Vision)

-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 사명(Mission)

-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헌신할 임무

○ 전략목표

- 위원회의 비전과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제4기(2015~2017년)에 추구할 주요 정책 목표

○ 핵심추진방향

- 각 전략목표 하에서 3년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중점 업무추진 방향

○ 성과목표

-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업무목표

○ 특별사업

- 전략목표 수준의 비중은 아니지만 성격상 기능, 대상, 영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성과목표로는 포괄하기 어렵고, 정치·사회적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기획사업

- 성과목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특정 시기 및 목표하에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는 사업(3개년 계획기간 내에서 신축 운영)

○ 추진기반

-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특별·기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대로서 위원회의 역량(독립성·인권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 추진절차

- 확정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계획된 기간 안에 수행할 구체적인 실행체계 및 절차

○ 관리과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 일반과제

- 관리과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성격이 위원회의 기본적 업무영역에 속하거나(진정사건 처리 등), 반복·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사·예산·조직 등 일반행정업무)

※ 인권증진행동계획(안)상의 선정된 목표와 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여부에 따른 고려보다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영역도 연도별 단위업무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함.

제2장 인권환경의 변화와 제4기 추진방향

1.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대응

- 우리사회는 산업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
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빈곤율은 2010년 OECD 평균 11%를 웃도는
14.3%이고¹⁾, 자살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자살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악
되고 있음.²⁾
- 1997년 IMF 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빈곤계층, 노동취약계
층의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전반적인 인권증진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국가 복지비용 지출은 2013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 22.1%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임.³⁾
-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기본적 생활기반이 취약한 비정규직, 빈
곤 노인 등에 대한 사회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2013), KIPF 경제위기 이후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률 변화 보고
서(2013)

2) OECD 발표<OECD Health Data 2014> 2012년 현황 및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결과자료 참조

3) 2014. 1.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 발표 사회보장 재정추계자료 및 OECD가 2012년 발표한 Implications
of Recent OECD Data for Korea's Social Expenditure를 요약 보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서 참조

2. 조사구제 · 인권교육 수요에 대한 전략적 접근

- 2009. 4. 6.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이 축소된 이후, 2014. 6. 현재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⁴⁾, 진정사건과 인권교육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진정사건 접수는 2013년 1만여 건으로 2009년도 대비 1.4배 증가했고, 인권교육은 2013년 군, 경찰, 학교, 시설종사자 등 180,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9년 대비 2.8배 증가
- 한편, 최근 3년간 직권조사 개시건수는 2011년 이후부터 2014. 5. 현재까지 감소 추세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
건수	9	5	17	3	3	16	14	11	1

- 조사업무의 경우, 한정된 조사인력 내에서 인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넘어서는 예방적 권리구제, 선택과 집중 방식의 대응이 필요
- 인권사각지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또한, 인권교육의 경우, 현재의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지원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4) 2009년 위원회 조직축소 전·후 조직 및 정원 현황

구분	조직축소 전	조직축소 직후	2014. 6. 현재
조직	5본부 22팀, 4소속기관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관 2국 12과, 3소속기관
정원	208명	164명	188명

3.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국가의 법·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함께 인권의 가치가 온전히 적용되려면 법적·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사회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인권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현 정부 및 제19대 국회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등 인권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인권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추진 현황〉

법률	제·개정일	시행일	비고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4. 10.	2008. 4. 11.	
연령차별금지법	2008. 3. 21.	2009. 3. 22.	
정신보건법(개정)	2010. 1. 18.	2010. 3. 19.	인권교육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3. 29.	2011. 9. 3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 6. 7.	2012. 6. 8.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정책기본법(안)			정부 국정과제 140번 법무부 추진 중
차별금지법(2012. 11. 김재연 의원) *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2013. 4. 철회	국회 법사위 계류 중		법무부 추진 계획 인권위 촉구 권고 후 모니터링 중
인권교육지원법(안)	의원입법 추진 중		인권위 T/F운영
북한인권법 등 10개 법안(안)	국회 외통위 계류 중		북한인권팀 대응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국회 운영위 계류 중		IOC 권고에 따른 개정안 추진 중

- 또한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보장,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등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대응 필요

4. 인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2011년 위원회의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이후, 2012~2013년 인권 전담 부서를 두거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영역에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 인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에서의 신설 요구, 기존 인권사무소의 기능 강화 및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의 인권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현황〉

(2014. 5. 현재)

구분	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전체	244	17	227
제정	64	14	50
비율	28.6%	82.4%	22.0%

※ 장애, 이주민 등 개별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5.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후속기관으로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권은 점차 국제규범화·국제기구화 되고 있어, 새로운 인권이슈에의 대응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 적극적 역할이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됨.
- 위원회는 2015년까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집행이사회 및 ICC 기법과 인권 실무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음.
- 향후에도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인권, 정보인권, 북한인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⁵⁾ 제도 도입 이후, 국가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7개 인권조약⁶⁾ 권고 사항에 대하여 국내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

5)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유엔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례 검토하는 활동

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I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3장 제4기 계획의 주요 특징

1. 비전의 유지, 사명의 가치지향성 강화

- 제1·2·3기의 비전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 온 상징성과 포괄성을 감안하여 제4기에도 유지
- 사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가치 지향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2. 기능과 대상을 포괄한 전략목표의 수립

- 제3기의 전략목표는 총 5개로 위원회의 기능적 성격을 중심으로 일원화 했던 반면, 제4기는 위원회의 4대 핵심기능(정책, 조사, 교육, 홍보·협력) 및 기본권 영역과 대상을 포괄하여 3년간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야 할 분야를 선정
- 이는 인권문제의 종합적 특성상, 위원회의 일부 기능이나 특정 기본권별로 접근하는 것은 단절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방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

3.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핵심추진방향의 설정

- 4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개의 성과목표 중에서, 대내외 인권 환경과 한정된 조직·예산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별로 핵심추진방향을 설정함.

전략 목표	핵심추진방향	도출배경
I	표현의 자유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 제3기 업무평가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소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집중 개선
II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 권리구제절차에의 접근성 및 자기해결능력이 취약한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군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III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 지역인권사무소의 인권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대응하고,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실현
IV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등 국내외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 및 역량을 제고

4. 인권의 지역화 및 전국적 확산 추진

- 지난 1·2기 계획에는 지역사회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3기 계획에는 조사·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위 개념으로 추진하였을 뿐 전략적 수준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2013년 제24차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의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학교폭력,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조사,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제4기에는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전략목표의 첫 번째 성과목표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접근성 강화’를 두기로 하고, 그 내용으로는 기존의 상담 및 조사영역을 넘어서서 지역사무소의 역할 범위 및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교육·홍보·협력 등 인권가치의 지역적 천착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5. 새로운 인권의제 및 영역의 발굴

- 향후 3년간 위원회가 추진해야할 전략적인 업무를 최대한 포괄하도록 하면서도, 한정된 조직과 예산 하에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는 주요 인권의제와 영역을 적극 반영

전략목표 1-2,5	사회안전망 집중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전략목표 2-4	이주민 인권증진 중 재외동포 인권증진 포함
전략목표 3-1	지역주민 인권 접근성 강화(인권사무소 신설 및 기능 강화, 지역 거버넌스 실현)
전략목표 4-1	노동양극화 해소, 국책사업과 환경권, 과학기술과 생명권·의료자기결정권, 재난과 안전권, 문화향유권 등

6. 성과목표의 체계적인 관리

- 제3기 계획을 비롯한 과거의 행동계획들은 전략목표에 따른 세부성과 목표 및 단위과제를 연간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애초 전략목표에서 추진일정, 기대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적지 않은 계획들이 단순히 실태조사, 토론회 등으로 그치거나, 정책개선 권고에까지 이르렀어도 이행방안을 소홀히 한 측면이 적지 않았음.
- 이에,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할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여 업무계획에 표기하도록 하고, 또한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담당부서로 하여금 3개년 동안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를 추진할 구체적 일정,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현실성과 실천력을 높이는 등 업무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제4장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내용

1. 비전과 사명

☐ 비전(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 사명(Mission)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 헌신해야 하는 임무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목표 · 핵심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전략목표 · 핵심추진방향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표현의 자유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 의미

- 전략목표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지향하거나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 핵심추진방향은 4대 전략목표 하에서 위원회가 3년간 성과를 내고자 하는 중점적 업무추진 방향

○ 전략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국가의 법·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함께 인권적 기준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인권선진사회를 구현함.
- 신체·표현의 자유 등 전통적인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의 보장 등은, 인권의 기본권적 성격상 한 사회의 법적·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되어야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정책기능과 관련하여 설계

○ 전략목표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비롯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각종 차별적 제도·관행의 개선에 주력함.

-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 특히 양극화, 국제화 및 고령화 현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에 주목하고, 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조사기능과 권리구제의 주요 대상(계층)을 연관하여 설계

○ 전략목표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공공, 민간, 학교부문의 인권교육을 점증 확대하고, 인권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에서의 인권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존중 문화를 배양하고 확산함.
-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켜 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핵심기능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역인권사무소의 기능 강화와 연계하여 설계

○ 전략목표Ⅳ: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 국제사회의 인권주류화 흐름에 따라 국내적 인권 문제를 발굴하며, 국내외 협력을 통하여 인권역량을 강화함.
- 사회양극화 현상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업인권, 정보인권 등 새로이 부각되는 인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 또한 UPR 및 국제조약기구 등의 권고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위원회의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며 인권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 성과목표

전략목표Ⅰ :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성과목표 ①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②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③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점검
- ④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⑤ 인권평가제도 도입

전략목표Ⅱ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성과목표 ①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 ②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③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④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 ⑤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전략목표Ⅲ :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성과목표 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②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 ③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 ④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⑤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전략목표Ⅳ : 인권의 공론화와 및 협력 강화

- 성과목표 ①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②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③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④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⑤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위원회의 연간단위 활동계획을 전인하는 기능

⇒ 4대 전략목표 하에서 총 20개의 성과목표 도출

○ 전략목표 I 관련 성과목표

-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권 보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권고 및 이행점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인권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

○ 전략목표 II 관련 성과목표

-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파생되는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 시정에 집중하고, 구금·보호시설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확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

○ 전략목표 III 관련 성과목표

- 국민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자립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교육을 선도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함. 또한 인권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여 인권가치의 대중화 등 사회적 확산을 도모

○ 전략목표 IV 관련 성과목표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제2기 NAP 권고 사항, 위원회가 2012년 정부에 제안한 12대 인권과제 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 기업인권, 정보인권, 환경권, 생명윤리(의료자기결정권 등), 문화권 등의 인권이슈를 조명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잇따른 인명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써 안전권(安全權) 등을 적극 공론화하며,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역량을 강화

3.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강화

-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3대 현안 등

○ 추진배경

- 북한인권 개선업무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 구조 하에 파생된 인권문제로서, ① 인권침해의 심각성, ② 사안 접근의 어려움 및 해결의 장기성, ③ 유엔 등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④ 정치적·법적·사회적 여건의 복잡성, ⑤ 정책·조사·협력·교육 등 다양한 기능적 접근의 필요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한 인권의제임을 감안하여 특별사업으로 추진

○ 추진과제

-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3대 인권현안,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에 따른 협력 활동 강화,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운영 등

4.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추진배경

-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주요 활동, 우리사회의 인권 상황 변화와 새로운 인권 과제를 성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인권정책과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

○ 추진과제

- 인권의 각 분야별로 그간 축적된 위원회의 주요 결정례와 그 파급 효과, 2001년 이후의 한국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계·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

5. 추진기반 및 추진절차

□ 추진기반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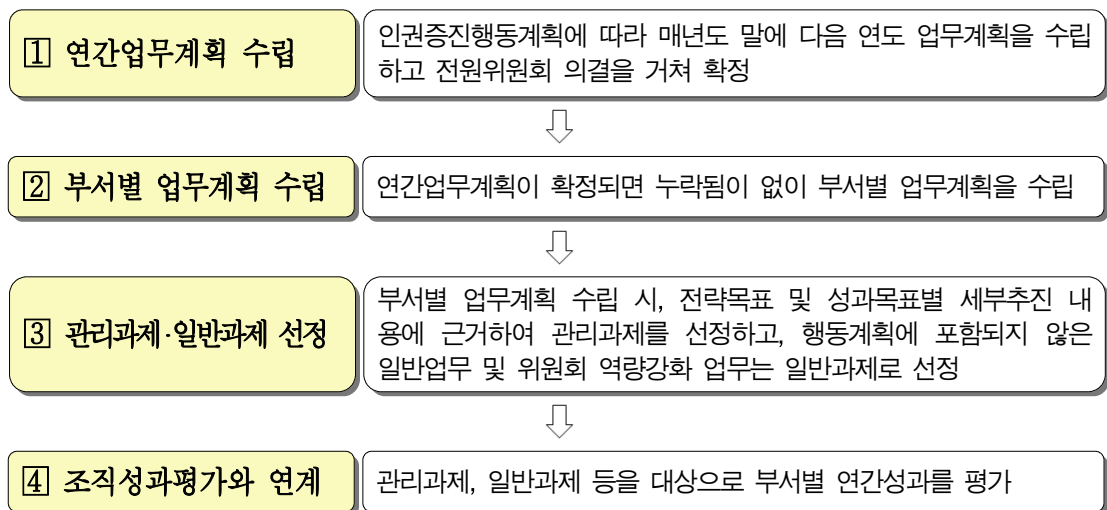
○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1993년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핵심기준은 ① 헌법 또는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② 정부로부터 자율성, ③ 구성과 구성원의 다원성·다양성, ④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광범위한 직무, ⑤ 충분한 조사권한, ⑥ 재정적 독립을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인바, 2014년 1CC가 우리 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의 다양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로 등급심사 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한 분석과 대책 필요

○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새로운 인권개념의 등장, 신규직원의 유입, 직원의 부서 간 전보로 인한 전문분야 보장 필요성, 인권수요의 대폭 증가 등 내외부 인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 추진절차



6.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따른 세부추진내용

전략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

성과목표 I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I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I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I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I -5 인권평가제도 도입

성과목표 I-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 현황과 추진방향

-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민주주의의 존립요건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능케 하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임.
-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시위 및 갈등 현장(예: FTA체결 반대 집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등)에서 다수의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이 접수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기초로서, 우리사회는 행정·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음.

- 그러나 여전히 피의자 체포·구속·유치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고지 등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수갑 등 장구의 과도한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서와 달리 검찰조사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피의자 무죄판결 사건 등 관련 사례를 살펴볼 때, 장애인·아동·여성 등 방어력이 취약한 계층과 소수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군인권법 제정 등과 함께 군사법제도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언론·출판,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의 보장(2016~2017)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 개선
- 임의동행과 피의자권리고지 시 입증책임 강화, 수갑 등 과잉 장구 사용 제한 방안 모색
- 검찰조사실 CCTV 설치 등 조사 투명성 개선
-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 (2015~2016)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의 형성과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실질적 보장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증진
 - 군대 내 권리보장 체계의 개선과 인권보장을 통한 군인 인권증진
- 이행점검 방안
 - 표현의 자유 관련 조사와 기획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정성)
 - 수사절차상의 권리보호 방안 권고 등(정성)
 - 형사사법절차와 군 사법제도 개선 권고 등(정성)
 - 군 수사 및 사법제도 관련 정책 제도 개선 권고 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조사총괄과

□ 현황과 추진방향

- 우리사회는 뒤늦은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의 후발주자로서 서구의 복지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복지제도의 외형은 신속하게 구축되었으나 제도별로 정합성과 체계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⁷⁾.
- 사회복지제도는 일련의 사회변동에 따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가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처하여야 하고,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과 서비스 경제로 이행되어가는 후기산업사회의 생산성 저하 속에서 근로자들의 가정을 지켜야 하며, 노령화되어가는 인구와 불안정한 가족구조로부터 노인과 아동이 빈곤에 희생되지 않게 하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마련하여야 함.
- 그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양극화 및 전통적인 빈곤이 개선되지 않고,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서 ‘송파 세 모녀 사건’(2014. 2.)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이나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이외에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책적 고려 대상임.
- 이와 같이 국가 개입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의 증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적

7)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윤희숙,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한계라는 딜레마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적 개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사회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우선적인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6)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2017)
- 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 의료서비스 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2017)
 -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통합을 통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5~2016)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 제도보장 이외의 지역사회기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구축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통한 사회권 보장 및 증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적이고 간이한 전달체계 구축

○ 이행점검 방안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기획단 운영(정성, 정량)
- 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 이행 확인(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성과목표 I-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현황과 추진방향

- 제2기 NAP의 수행기간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이행 결과와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제3기 NAP 권고안 수립이 요청됨.
- 2014년 현재 정부 각 부처의 NAP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부분,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 부분,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 부분이 취약함.
 - 또한 유엔조약기구 및 인권이사회의 UPR, ILO 권고, 그리고 국제인권동향에 비추어보면, 정보, 기업, 노동, 이주민(난민), 아동, 여성의 인권 증진, 그리고 환경권 등의 부분에 있어 우리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이행점검 및 권고안 도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인권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동향과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추세를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 특히,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권 보장이 필요하고, 국가 기관의 불법사찰, 선거개입 등에 의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고도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추진(2015~2016 상반기)
 - 주요 분야별 실태조사 추진, 공청회 개최, 권고 결정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점검(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정부가 인권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인권증진의 정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꾀함.
 - 권고안 도출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모니터링 역량을 배가함.
- 이행점검 방안
 - 주요 분야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공청회 개최 여부(정성)
 - 제3기 NAP 권고안 도출 및 적절성(정성)

- 제3기 NAP 이행점검 체계 구축(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성과목표 I-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현황과 추진방향

- 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와 관련하여 정부의 이행상황을 모니터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 10. 우리나라의 제2기 UPR 보고를 받고, 2013. 3.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70개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이 중 288개를 불수용함. 이에 우리 정부의 UPR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

8) 제2기 UPR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70개의 권고 중 주요내용: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및 연구
2. 2013.5.5. 발효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 및 연구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설립 검토
4. 2014. 4. 14. 발효된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CP;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의 조속한 비준
5.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 및 연구
6. 국제노동기구(ILO)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가사노동자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7.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
8.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
9.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0.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11.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
1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13.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

진하고, 권고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2017년에 예정되어있는 차기 UPR 심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유엔 협약 및 협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 등)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는 권고 및 의견표명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한 조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5년은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정부가 2006. 5. 9.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위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그에 따른 국내 예방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는 2014년 하반기, 사회권협약 정부보고서는 2016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는 2017년 제출 예정인바, 이에 대한 중간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등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제출이 2017. 6.까지로 예정돼 있고,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인바,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항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차 정부보고서(2014) 심사 이후 모니터링 강화
 - 사회권협약(ICERD) 정부보고서 검토(201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보고서 검토(2017)

- 아동권리협약(CRC)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3개년)
-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3개년)
-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
 - 고문방지협약(OPCAT)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16~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정부가 UPR 및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실적인 국가 보고서를 작성토록 독려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정착에 기여
 - 미가입 국제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
- 이행점검 방안
 - 제2기 UPR 권고 이행 모니터링 중간점검 보고서(정성)
 - 제3기 UPR 심의(2017년) 대비 실태조사, 토론회 결과보고서(정성)
 -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연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정성, 정량)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1과

□ 현황과 추진방향

- 국가인권지수는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을 진단하여 인권정책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임. 이에 위원회는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음.
- 국가인권지수 개발의 기반이 되는 인권지표는 주요 인권영역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통계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관련기관에서 생산 중인 통계 외에도 새롭게 생산이 필요한 통계나 가공이 필요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인권지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5년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임.
- 따라서 이후 3년간은 생산이 필요하거나 가공이 필요한 통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와 함께 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 입안 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현재 이러한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 실행을 위하여 선진 국제 사례 연구 등 도입방안의 모색이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체계적인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2015~2017)
 - 영역별(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대상별(소외계층),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 용역(2015)
 - 인권통계 보완 및 조사 용역(2016~2017)
 - 전문가 자문 및 회의 개최, 국제인권통계 분야 번역, 통계집 발간 및 배포(2016~2017)
-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3개년)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배포 및 공개
 -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자료요청 및 국제인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이행점검 방안
 - 영역별(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대상별(소외계층),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의 적절성(정성)
 - 인권통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정성)
 - 국가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기반구축의 적절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전략목표 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 성과목표 Ⅱ-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 Ⅱ-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Ⅱ-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Ⅱ-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 Ⅱ-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성과목표Ⅱ-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아동·청소년이 미흡한 돌봄 환경에 처해 있음.
- 2012년 말 기준, 보호치료시설 및 양육시설 등 281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된 아동은 15,900여 명인데, 제도개선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문적 보호프로그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급식지원비 등으로 아동 돌봄이 미흡한 실정임.
- 최근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확대나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통하여 빈곤 아동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대안양육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비혼부모들이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80% 이상의 비혼부모 아동은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빈곤, 사회적 편견이나 정부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분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처벌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조치들이 상당수 도입되고, 형사 사법절차 등에 있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또한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위원회는 2010년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정책 개선권고 등을 통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음. 이 권고의 후속조치로서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한편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학칙 제·개정 시에도 학생의 의견 청취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당국이 두발이나 복장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노인 스스로 권리주체임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년 연장,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일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공공부조 현실화, 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이 빈곤이나 병고로 고통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2009년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개정⁹⁾되어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됨에 따라, 모집·채용 영역의 고령자 차별 문제로부터 해고·퇴직 영역에서의 차별, 청년 일자리 문제로까지 연령차별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연령차별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정, 비혼부·모 아동 등 취약분야 인권개선(3개년)
-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2015~2016)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2017)
- 연령차별 관행 개선
 -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정년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3개년)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안 마련(2016)
 -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지속 운영(3개년)
 - 노인인권현안을 반영하여 노인인권관련 실태를 조사(3개년)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노인관련 정책 등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정부 정책 검토 및 권고 추진(3개년)

9)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돌봄종사자(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처우 관련 정책개선권고(2015)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아동인권 개선 및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분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돌봄을 사회적 역할로 인식,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른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이행점검 방안

- 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이행 확인(정성)
- 노인인권 지킴이단, 노인인권 NGO의 역량강화를 통한 모니터링(정성)
- 사업 및 정책권고 추진 시 관련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정성)
- 해고·퇴직 영역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차별조사과

성과목표Ⅱ-2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온전한 사회참여와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노동·활동지원·환경개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편적 장애극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에서 장애인 주거, 경제활동참가 및 활동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
- 장애아동·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달 및 정신장애인은 의사표현과 자기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자기결정권을 제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여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이 강하여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나이나 성별,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에서 다중적 차별에 직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할 수 없는 정보나 시설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등 미흡한 면이 많아 장애인의 여타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접근권 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실태파악 및 개선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 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3개년)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
 -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3개년)
 -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주거, 노동(경제 활동), 활동지원 등에 대한 기본 체계 확립
 - 다중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집중지원으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권리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접근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 이행점검 방안

- 실태조사결과보고(정성)
-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등 제도 개선(정성)

담당부서: 장애차별조사1·2과

성과목표 II-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2013년에 발표한 OECD 국가 성별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로 성별격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격차지수의 생활영역 가운데 보건·교육 부문의 성별격차는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의사결정 부문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관련 주요 지표와 순위변동 >

구분 연도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유엔개발계획기구(UNDP) [성불평등지수(GII)]	
	순위	조사대상	순위	조사대상
2013	111	136	-	-
2012	108	135	27	148
2011	107	135	11	146
2010	104	134	20	138

- 이에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미디어(방송, 언론광고 등)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은 물론 우리사회의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남성근로자 대비 62.6%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여성노동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후 재진입이 어렵고 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인 바, 이는 성차별 해소는 물론 모성 보호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012년 OECD 국가의 남녀임금격차 >

OECD 평균	호주	캐나다	헝가리	체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4.8	13.8	18.8	11.3	15.1	6.2	6.4	26.5	37.4	17.8	19.1

- 여성근로자 중,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emotion work, emotional labor)을 하는 콜센터 전화상담원, 대형마트 판매원, 간호사 등 특정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법적 보장 및 관행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현실임.
-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로 진입하기 이전의 여성 전공의(수련의)들이 실습생이자 노동자이며 여성이라는 다중적 지위로 인해 인권침해 및 성차별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성희롱은 여성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업의 발탈로 이어져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직장문화로 인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직 및 돌봄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성희롱은 현행법상 보호범위에 있지 않음.
-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업주 등에 해

결을 요구하여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부족으로 내부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바,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예방
- 여성 전공의 등 특수분야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 등 모니터링

○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방안 마련(2015)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특수고용 및 돌봄노동자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 강화 (2016~2017)
- 성희롱 조사 및 구제 매뉴얼 개발·배포(2015~2017)

○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3개년)

- 정치·경제 등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방송·언론광고 등) 성차별 모니터링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촉진

- 고용영역(채용)에서 임신·출산, 가족상황, 혼인여부,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 시정과 여성 노동인권 개선
-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 이행점검 방안
 - 실태조사결과보고 및 정책권고(정성)
 -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성)

담당부서: 차별조사과

성과목표 II-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 현황과 추진방향

- 2013년 3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47만 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국내 체류 유형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난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체류 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정책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경우,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1991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

모의 비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도 입국 자녀는 공공교육 지원체계의 부재로 학업을 중도에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함.

- 난민 및 무국적자의 경우,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국가 자체가 부재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보다 인권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내체류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조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2013년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가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및 구소련연합(CIS)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재외동포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상당수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이들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2015~2017)
-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2015~2017)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2015~2017)
-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2015~2017)
-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2015~2017)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기본권 보장
- 이주민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을 보장
-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모성보호를 증진
- 난민 인정 절차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 포함)의 사회권을 증진
-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인권상황을 파악하여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마련

○ 이행점검 방안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검토 보고(정성)
- 이주여성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보고(정성)
-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 방안 검토 보고(정성)
-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검토 보고(정성)
-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검토 보고(정성)

담당부서: 침해조사과

성과목표 II-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현황과 추진방향

- 시설과 환경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군 등에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동적인 진정사건 조사를 넘어 방문·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다수인보호시설 중 전국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폐쇄적인 시설운영의 특성상 진정이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구금시설 및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 생활인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의 기능과 욕구에 따른 탈 시설 정책으로 전환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현재 변화되는 제도적 개선 정도로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스스로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열악한 환경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조치나 관련 정책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함.
-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바, 각종 인권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구제업무를 강화하며, 인권지킴이 활동을 제도화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차별영역의 경우,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넘어서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실태조사 등의 기획조사가 필요함.
-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복무 중 경험하는 불합리·부조리에 대해 안전하게 소원 및 청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 및 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의 수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인권취약 계층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순회상담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군(영창),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3개년)
-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 아동, 노인, 노숙인, 갱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증가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자주적 권리실현 보장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과 치료적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
-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활성화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 긴급구제업무 강화, 인권현장 모니터링 및 인권지킴이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
-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2015)
 - 소원수리제도, 전공사상 보상체계 개선 등

- 인권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안정적인 진정권 보장 및 강화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강화
 - 정신장애인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처우 및 환경 개선
 - 인권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 군대 내 권리구제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정책제언을 통한 군 인권 증진
- 이행점점 방안
 - 방문조사 등 조사결과보고(정성)
 - 각종 토론회, 인권지킴이 활동 결과보고(정성)
 -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역별 권리구제 및 상담 시스템 도입(정성)
 - 군인 권리구제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정성)
 - 인권전문교육 프로그램 추진 결과보고서(정성, 만족도)
 - 인권순회상담 실시 결과보고(정성)
 - 진정함 점검 결과보고서 및 면정진정 처리 소요일(정성, 정량)

담당부서: 조사국 소속 각 과, 인권상담센터

전략목표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성과목표 Ⅲ-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Ⅲ-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Ⅲ-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Ⅲ-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Ⅲ-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성과목표Ⅲ-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현황과 추진방향

-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가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인권사무소 신설 및 기능 강화 검토가 필요함.
- 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진정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하였으나 조사범위가 구금·교정시설과 정신보건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 이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인권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 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분야의 진정사건 조사기능 이관도 검토하고자 함.

- 한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등 학생 인권 문제, 시설생활인 및 장애인·여성·아동 등에 대한 학대 문제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홍보 강화, 인권체험관 활성화, 다양한 인권 정보의 제공,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 인권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 인권수요 대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인권사무소의 신설 확대 추진
 -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진정사건 등 조사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인권사무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 찾아가는 인권상담·교육홍보 활성화 등 접근취약지역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강화
-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의 강화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3개년)
 - 인권체험, 교육, 전시문화, 자료실 등의 복합적인 인권문화공간으로서 인권전시관(체험관)의 기능 강화
 - 지역 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인권교육 전담 시설 확보
 - 위원회 발간자료 등 인권 관련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인권자료실 운영

-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 강화(찾아가는 인권문화전시 활성화, SNS 활용·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의제 개발, 토론의 장 마련 등)
-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3개년)
 - 지자체 인권조례제정 등 인권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
 - 지자체·공공기관·인권시민단체 등 인권정책협의체 혹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 인권문화 조성 지원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 및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구제
 - 지역 내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내 인권의식 강화
 - 전국적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 이행점검 방안
 - 인권사무소 신설을 위한 업무추진의 실효성(정성)
 - 지자체 진정사건조사 등 인권사무소 기능강화 추진의 실효성(정성)
 -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등 권리구제업무 추진의 적절성과 실효성(정성)
 - 인권교육 활성화 업무추진의 적극성과 실효성(정성)
 - 인권홍보·협력 활성화 업무추진의 창의성과 실효성(정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사무소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07년 4월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 제정을 건의하고, 2013년 1월에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 12대 인권과제’로서 인권교육법 제정을 제시하였음.
- 2014년에는 제19대 국회를 맞아 위원회 내에 관련 TF를 만들어, 2014. 9월 의원입법을 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설명 및 정책홍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
- 한편,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기획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2014. 8. 27.부터 인권교육과를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으로 분리하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 인권교육정책 기능의 강화를 추진
- 인권교육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2009~2011년까지 연도별로 1건, 2012년에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를 포함하여 4건, 2013년에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관련 1건으로, 향후 교육관련 정책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9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을 결의하고 동 프로그램의 세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교육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 대표발의 의원과 공공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추진
 - 입법과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 지지노력
- 인권교육원 설립 노력 및 인권교육센터의 활성화(3개년)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조직상의 토대 마련 노력
 - 본부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강화
 - 4개 인권사무소별로 지역 인권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인권교육 정책기능 강화 인프라 구축(2015~)
 - 인권교육 포럼(연구회) 구축 및 정례적 운영
 - MOU 체결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등
-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전개(3개년)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교과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를 추진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으로 인권교육 발전방향 제시
- 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이행 사업 전개(3개년)
 - 기본계획 수립·홍보, 언론분야 콘텐츠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 등 추진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기회 보장, 인권 침해와 차별 예방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 인권교육원 설립으로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혁신과 교육운영 자립 기반 구축

-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으로 권역별 인권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 인권교육 정책 기능 제고를 통하여 인권교육 발전 방향 제시 및 체계성 강화(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인권교육사업 선도)
- 인권교육포럼,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교육 정책 인프라 구축
-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교육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교육 발전 도모
-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대 언론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및 확산

○ 이행점검 방안

- 인권교육지원법 입법추진 관련 실무추진단과 자문단의 점검 병행
-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법 제정과 예산 확보 전제)
- 인권교육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연간 성과목표 수립 및 달성 추진
-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니터링·정보수집 및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행·발전 방향 공동모색 등

담당부서: 인권교육과

성과목표Ⅲ-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 현황과 추진방향

- 맞춤형 교육콘텐츠 교재를 누계 총 50여 종(학교영역 17종, 공공영역 17종, 시민영역 14종 등)을 개발하였으나 인권영역과 대상별, 성장단계 별로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추가적인 세부 교육과정별 맞춤형 교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일반 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만화 및 그림책 등 특성화된 콘텐츠개발 추진 필요
- 교육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총 20종이나, 사이버교육 수요 증가와 영역별 세분화 요구에 따라 추가 개발하고, 인권교육 콘텐츠는 교육과정별 맞춤형교재 개발과 사이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병행(3~5년 단위 개정)

□ 추진과제 및 일정

-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
 - ‘텍스트 개발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교재 출판’ 과정(3년 주기)을 거쳐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과 언론, 아동청소년 인권, 정보와 인권, 아동과 인권 등 발간
- 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만화 등의 특성화된 콘텐츠 개발 추진(3개년)
-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3개년)
-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해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3개년)
 -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와 인권,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과 언론, 아동청소년 인권, 정보와 인권 등)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 영역별 맞춤형 교재 및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분야별 인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사이버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의 대중화 및 확산에 기여

○ 이행점검 방안

- 교육협의회, 전문위원회 등 활용하여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담당부서: 인권교육과

성과목표Ⅲ-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 현황과 추진방향

- 위원회의 인권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인권교육으로 구분되며, ‘감수성과정 → 강사양성과정 → 리더과정’이 일반적 과정운영 프로세스임.
- 집합교육은 인권정책 관련 정규과정,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인권강사 양성 과정, 인권특강, 방문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교육임.
- 사이버 인권교육은 2014년 현재 공직자, 교사,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9개 과정, 연간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에서의 사이버 과정운영시스템의 확대 보급이 필요함.
-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인권교육 운영체계와 인권교육 대상별, 분야별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2015)
 - 영유아 인권교육 강화
 - 언론분야 인권교육협의체계 마련
- 신규 인권교육 과정개발(2015)
 - 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
- 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3개년)
 - 2017년 연간 10만여 명 대상 교육운영 목표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교육 운영의 체계적 수행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 기반의 사이버인권교육의 대중화와 수요자 중심의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
- 이행점검 방안
 - 인권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인권교육과

□ 현황과 추진방향

- 위원회 설립 이후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례, 세계인권선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음.
 -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한 주요 결정례의 뉴스매체 보도
 - 매년 제작되는 인권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사업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왔으며, 유명감독과 배우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
 - 격월간 발행의 인권잡지는 기관지의 성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인권을 알리는 잡지로 자리 잡았으며 웹진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양하게 서비스
 - 방송과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보급
-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인권을 알린 제3기 성과에서 더 나아가, 향후 인권에 무관심한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외연을 넓혀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보편적이고 쉬운 메시지와 흥미로운 표현방법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와 인권의 생활화를 일반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 수행이 필요
 - 또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전개, 비용 대비 높은 효과의 뉴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인권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3개년)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모전 등 기존의 활동을 인권 캠페인과 연계하여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킴.

○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3개년)

- 위원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블로그의 이용자 확대를 통한 SNS의 안정적인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활동 확대
- 비용 대비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뉴미디어 매체 발굴

○ 영화, 잡지의 보급 확대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3개년)

- 문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현지 시민단체 등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곳과의 연계를 통해 작은 영화 상영회를 수시 진행하여 인권 관련 영화를 소개
- 인권잡지 발행부수 증가를 통한 배포확대
- 결정레 등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확대 및 활용
- 인권만화 추가 발행 및 신규 콘텐츠 제작 검토
-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수동적인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인권의 외연 확대
-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매체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홍보 기반 마련
-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 확립

○ 이행점검 방안

-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
 - 연간 2만 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정량)
 - 홍보전문가 회의를 통한 행사 진행 점검(정성)
-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
 - 뉴미디어 자문회의를 통한 SNS 및 뉴미디어 활용 점검(정성)
- 영화, 잡지의 보급 확대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
 - 연간 4회(분기별 1회 기준)의 지역 내 영화 상영회 개최(정량)
 - 인권잡지 발간 증대 및 웹진 활성화를 통한 고객 확대(정성)
 - 홍보전문가 회의를 통해 공모전 및 기존 홍보콘텐츠 활용 점검(정성)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전략목표 IV |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성과목표 IV-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IV-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IV-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IV-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IV-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성과목표 IV-1 |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 현황과 추진방향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비율이 50%¹⁰⁾에 달하여 부의 불평등구조가 고착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높은 자살율, 낮은 출산율, 낮은 행복도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 특히 비정규직 증대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간접고용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ILO 등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관련 권고의 이행 촉구, 실업자 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 권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3.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과조사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13.6.)

□ 추진과제 및 일정

- 간접고용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3개년)
-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 정부 수용 추진(3개년)
 - ILO 등 국제노동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노동관련 권고의 이행문제
- 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배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문제 관련 개선권고 준비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열악한 간접고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 국제기준 미달 노동관련 법 제도 개선
 - 실업자 등 노동시장 배제자의 생활안정성 제고
- 이행점검 방안
 -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등에 대한 정책반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정성)
 - 정부 해당부처와의 협력 강화, 설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정성)
 - 시민사회, NGO와의 협력을 통한 권고 등 이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기존의 활동이 대기업의 인권경영이란 측면에 맞추어져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대응은 부족
- 따라서, 중소기업 인권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현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
-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을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의 반영,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산업현장에서 위험물질 취급 시 작업장 안전 및 유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논의사항을 근거로 제3기 NAP 권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또한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인권경영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기업과 인권 관련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내 인권경영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국제금융공사(IFC)에서 발간한 기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 지침'(HRIAM :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등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MOU 체결 등을 추진

□ 추진과제 및 일정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3개년)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을 통한 주요이슈 분석 및 안건 발굴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개선 권고

- 기업인권 관련 사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 인권경영포럼 및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등의 지속적인 개최
- 인권경영 선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MOU 체결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OECD 책임경영포럼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의 참석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이슈의 국내 전파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각 기업이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추진하며, 관련 법령 및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행점검 방안

-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권고(정성)
- 현안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정성)
- 인권경영포럼 및 토론회 등의 개최(정성)
-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MOU 체결(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성과목표 IV-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¹¹⁾ 등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선거게시판 실명확인제 등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¹²⁾이 시행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입사지원서 작성 시 SNS 아이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 근로계약체결 시 보안각서에 의한 이메일 수집 사례, CCTV를 통한 근로자 감시 및 위치정보 수집 사례 등과 관련하여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필요
- 국가에 의한 검열에 대하여 유엔과 위원회가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¹³⁾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심의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확산 노력에 요구됨.
- 국가정보기구에 의한 감청 사건, 인터넷 주소체계의 개편 등을 계기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개인 등에 의한 상향식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정보인권의 신규 의제 발굴·공론화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고도 정보사회 발달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RFID 부착, 웨어러블

11) 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 47, 252(병합)

12)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등

13) 1.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A/HRC/17/27/Add.2) 20페이지 제93항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2.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2010.9.30.)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컴퓨팅, 센서네트워크 등)¹⁴⁾의 발전에 따라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술이 부여되고 네트워크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필요함.

-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식정보의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정보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 추진과제 및 일정

-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2015)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 및 정책보고서 발간
-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행 개선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년)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이행 평가
-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 활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구축
-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14)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궁극적 방향으로서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웨어러블 컴퓨팅(스마트 워치, 구글글래스, 의복 등과 같이 몸에 부착된 여러 사물에 컴퓨터 기능을 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기술), 센서네트워크(사람과 사물과의 비접촉 센서를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기능)를 말함.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정보인권 보고서 정책방향에 대한 정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보인권에 대한 새로운 과제 개발
-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유비쿼터스 컴퓨팅 정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 새로운 정보인권 이슈 발굴 및 현안 대응
- 국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증진

○ 이행점검 방안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 및 최종 결과 보고(정성)
-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정성)
- 정보인권 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토론회 또는 간담회(정성)
- 정보인권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성과목표 IV-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 현황과 추진방향

- 밀양 송전탑 공사, 새만금 방조제 공사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

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권, 환경권, 생존권과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인권이슈를 발굴하고 새로운 인권영역으로 부각시키고자 함.

- 세월호 사건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재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인권으로 재부각되는 점에서 국가의 재난대응 관리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관한 새로운 인권의제를 개발하여 안전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위적 생명연장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 유전자 변형·배아복제, 연구용 난자 채취 등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 불법 장기이식 및 매매에 따른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소득격차 등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로 지역 및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격차, 문화적 정체성의 보장 등 문화적 향유권의 차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2015)
 - 부안, 밀양, 강정 및 4대강 등 개발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016)
 - 국책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내용적 기본권 보장 제도 마련(2017)

-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 재난 시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지침 마련(2015)
 - 해외 재난대응 시스템 연구 분석(2017)
 -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각 분야에 있어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2015~2017)
 - 재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정책 개선 방안 마련(2015~2017)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
 - 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 변형 및 개발, 난자채취, 장기이식 불법매매 등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권 향유 격차와 차별 해소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의제로서 환경권과 안전권을 인권의 이슈로 부각, 보장 증진
 - 환경권, 안전권 관련 과제 발굴 및 현안 대응
 -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문화차별 해소 기여
- 이행점점 방안
 - 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이행 확인(정성)
 - 국책사업 관련 지역주민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차별조사과

□ 현황과 추진방향

○ 국내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증진 관련

-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과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인권 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대전인권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인권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지역사무소 설치 지역에서의 단체와의 협력도 활성화 추세임.
-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인권 논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은 미약한 현실인바, 인권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정례간담회를 활성화하고,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과 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관련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기구 주관 다자간 회의체 참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
-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OECD 책임경영포럼,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국제기구 주관 다자간 회의체에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발표·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경험과 같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북한인권', '정보인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 및 역량 강화 추구

- *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MOU 체결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 관련

- 매년 개도국 인권 업무 종사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인권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의 경험을 소개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추진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내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증진 관련

-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3개년)
 -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평가와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인권단체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 인권포럼 개최(3개년)
 - 인권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 주요 인권의제의 공유·논의 기회 제공
 - 지역 사무소단위의 활동가 지원프로그램과 병행
- 강원 및 제주지역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3개년)
 - 지역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인 강원 및 제주 지역 등에 인권 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상담, 교육프로그램, 간담회 등 위원회 사업의 우선배치를 통해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권적 관점을 통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도모

○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 유엔, ICC, APF의 연례회의 및 기타 정례회의 참가 시 위원회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와 홍보를 통해 국제무대의 의제선정 (agenda-setting) 과정에 동참
- ‘기업과 인권’, ‘북한 인권’, ‘정보 인권’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 있는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를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
-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 연 1회 ODA 초청연수 운영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업의 현장성을 제고하여 인권증진에 기여
 - 강원 및 제주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대 마련과 지역 인권프로그램의 활성화 도모
 - 국제사회에서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인권선진국의 위상 강화
 - 외국의 인권정책수립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 기술지원을 통해 인권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 확대
- 이행점검 방안

- 외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주요 진행상황 및 현안 점검(정성)
- 정기적 국제회의 참석 및 ODA 연수 실시 확인(정성)
- 결과보고서 적시(適時) 제출 여부(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홍보협력과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	----------------

□ 현황과 추진방향

-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주권국가의 배타적 관할을 넘고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보편적 가치임.
-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권고를 발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주요한 국제적 인권이슈로 제기됨.
 - 특히,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COI의 권고는 향후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원회는 보편적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북한인권 상설기록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국제심포지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기록·관리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3개년)
 -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 촉구(권고, 의견 표명 등)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협력 및 공조 방안 마련
- 북한인권 상설기록전시관 설치 및 운영(3개년)
 -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진, 영상,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설기록 전시관을 설치 운영

□ 기대효과 및 이행점점 방안

- 기대효과
 -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이념논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생산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우리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공조방안 마련
 -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이행점검 방안

-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 권고(정성)
- 현안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표명(정성)
- 국제심포지엄, 토론회 등 결과보고서(정성)
-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여론 조성(정성)
-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운영의 적절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북한인권팀)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현황과 추진방향

-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립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변화와 새로운 인권 과제를 성찰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인권 정책과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함.
- 인권의 각 분야별로 그간 축적된 위원회의 주요 결정례와 그 파급 효과, 2001년 이후의 한국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계·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분야의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TF 구성(2015)
 - 분야별 집필진 및 외부 자문단 구성, 15년사 체계 구성 협의 및 기초 자료 취합
- 15년사 분야별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감수(2015 하반기~2016 상반기)
 - 인권 분야별 기초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외부 자문위원 등 감수
- 15년사 발간 및 배포·후속조치(2016)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배포 및 토론회 개최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과정 및 위원회 설립(2001년) 전후의 인권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조망함.
 - 정부가 가입·비준 또는 유보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 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과 연계하여 위원회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결정례와 그 후속조치 및 파급 효과, 인권 각 분야별 통계 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 등을 시계열적으로 체계화하여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함.
- 이행점검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 과정 및 내용의 적절성(정성)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배포 및 활용의 적절성(정성)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현황과 추진방향

- 1993년 12월 20일 개최된 제8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과 다양성의 보장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고,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성이 반영될 것과 이들이 참여 및 협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2014년 ICC 승인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독립성, 다양성 등의 문제로 등급심사결정을 유보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국내적으로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05년과 2012년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확보 등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바,
 - 제18대 국회에서 21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9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
 - 이에 위원회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대응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가기관(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선결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추진이 필요

□ 추진과제 및 일정

- 파리원칙 준수를 위한 ICC 승인소위 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
 - 법조계, 관련 전문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독립성 및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
-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검토 및 의견제출(상시)
 - 개정안 발의 시 신속한 입수 및 타 정부부처 의견 확인 및 쟁점 검토
 - 법안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적극 참여, 모니터링 및 관련 자료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절차 진행 시 전략적 대응(상시)
 - 위원회 독립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 국회 운영위, 법사위 등 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 최근 제19대 국회의 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기본권 관련 개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관련 논의 공론화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행정법무담당관

□ 현황과 추진방향

-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서의 인권개념이 대두되고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인권수요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및 일정

- 분야별 인권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정책, 조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집중교육과정 개설 운영
 - 정책개발 역량강화 전문과정 실시(2015년~2017년) : 인권정책 과제 발굴, 검토보고서 및 결정문 작성 방법, 인권현안 대응, 정책개발 일반, 해외 우수 정책개발 사례 등
 - 조사관학교(신규 조사관 입문과정, 조사관 역량 심화과정 등) 운영 등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 인권침해 결정례 등 판단기준, 객관적 사실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
 - 보직경로체계 정비 추진 및 직무연계교육 실시
- 전문직위제도 적극 활용
- 업무단위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상시학습 분위기 구축
 - 사건사례 중심의 조사관 스터디 활성화
 - 헌법 및 판례연구, 정책과제 연구모임 지원
 -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부서장 평가 및 부서장의 성과관리 책임 강화

- 인권위원 지원체계 내실화
 -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지원
 - 위원회 현안 정보 공유 활성화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인권정책과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체계도1(개요)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 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 목표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5. 인권평가제도 도입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제 4기 인권증진 행동 계획 (2015-2017) 체계도 2(종합)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 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 목표 및 단위 과제 추진 일정 (예시)	1.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1.1. 언론 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1.1.2. 피의자 체포 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2016-2017) 1.1.3.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1.1.4.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2015-2016) 1.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1.2.1. 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1.2.2. 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1.2.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1.3.1. 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1.3.2.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2015-2016 상) 1.3.3.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2017) 1.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1.4.1.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사회권협약 2016, 여성차별철폐협약 2017,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아동권리협약 재권고 사항 등) 1.4.2.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1.4.3.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2016) 1.4.4.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1.5. 인권평가제도 도입 1.5.1.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3개년) 1.5.2.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3개년)	2.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1.1.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모 등 취약분야 아동 인권개선(3개년) 2.1.2.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2015) 2.1.3.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17) 2.1.4.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3개년) 2.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2.1.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2.2.2. 다중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3개년) 2.2.3. 장애인 유형별 접근권 강화(3개년) 2.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2.3.1.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2.3.2.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3개년) 2.3.3.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3개년) 2.4. 이주인·재외동포 인권 보장 2.4.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3개년) 2.4.2.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3개년) 2.4.3. 이주아동 발달권 축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3개년) 2.4.4.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3개년) 2.4.5.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3개년) 2.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2.5.1. 군, 구급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3개년) 2.5.2.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2.5.3.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2.5.4.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2.5.5.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2015)	3.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3.1.1. 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3개년) 3.1.2.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3개년) 3.1.3.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가바네스의 실현(3개년) 3.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3.2.1.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3.2.2.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3개년) 3.2.3.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운영 및 MOU 강화(3개년) 3.2.4.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2015) 3.2.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의 이행(3개년) 3.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3.3.1.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언론, 아동청소년, 정보 인권 분야 등 추가 개발) 3.3.2. 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화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3개년) 3.3.3.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3개년) 3.3.4.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3개년) (사회복지, 지방자치, 정보, 아동청소년 등 7개 분야) 3.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3.4.1.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2015) (영유아 인권교육 강화, 언론분야 인권교육협의체 마련) 3.4.2. 신규 과정개발(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2015) 3.4.3. 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3개년) 3.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역량 향상 3.5.1.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2015) 3.5.2.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 기반 구축(2016) 3.5.3.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3개년)	4.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4.1.1.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3개년) 4.1.2.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3개년) 4.1.3. 노동관련 비정규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3개년) 4.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4.2.1.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방제도적 기반조성(3개년) 4.2.2.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4.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3.1.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2015) 4.3.2.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4.3.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 4.3.4.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4.3.5.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4.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4.4.1.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3개년) (개발사업 추진 관련 환경권, 주민참여 보장 방안) 4.4.2. 안전한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3개년) 4.4.3.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2017) (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관리, 난자 채취, 장기이식·매매 등) 4.4.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 (지역 및 계층 간 격차해소, 접근성 확대 및 다양성 보장) 4.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4.5.1. 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체 등 협력 강화(3개년) 4.5.2.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4.5.3.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현안 활동 강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3개년)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2015-2016)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3(세부추진과제 포함)

-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 ☐ 전략 및 성과목표별 주요내용

핵심 추진 방향	I.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II.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III.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IV.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	---

전략 목표	성 과 목 표	세 부 추 진 과 제 (단 위 과 제)
인 권 증 진 을 위 한 기 반 구 축 [1]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언론·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의 보장(2016~2017)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개선 - 임의동행과 피의자권리고지 시 입증책임 강화, 수갑 등 과잉 장구사용 제한 방안 모색 - 검찰조사실 CCTV 설치 등 조사투명성 개선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2015~2016)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우선적 소득보장방안 마련(2015) -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마련(2016)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선 방안 마련(2017)
		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 의료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7) -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통합을 통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5~201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 제도보장 이외의 지역사회기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2015-2016 상반기)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업무협약, 공청회, 실태조사 추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2017)

사 회 적 약 자 및 취 약 계 층 의 인 권 보 호 〔Ⅱ〕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사회권협약 정부보고서 검토(201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중간보고서 검토(2017) -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정부보고(2014 하반기)에 따른 이행모니터링 강화 - 아동권리협약(OPCP)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3개년)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3개년)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 - 고문방지협약(OPCAT)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16~2017)
	5. 인권평가제도 도입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2015~2017) - 영역별(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대상별(소외계층),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 용역(2015) - 인권통계 보완 및 조사 용역(2016~2017) - 전문가 자문 및 회의 개최, 국제인권통계분야 번역, 통계집 발간 및 배포 (2016~2017)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3개년)
사 회 적 약 자 및 취 약 계 층 의 인 권 보 호 〔Ⅱ〕	1. 아동·청소년·노 인의 인권 증진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정, 비혼부·모 아동 등 취약분야 아동인권개선(3개년)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2015~201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2017)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지속 운영(3개년) -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정년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3개년) - 치매노인 관련 정부정책 검토(2015 상반기) -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안 마련(2016)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 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3개년)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 -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3개년) - 사·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방안 마련 -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강화방안 마련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의한 차별 예방 - 여성 전공의 등 특수분야 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 등 모니터링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방안 마련(2015)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특수고용 및 돌봄노동자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 강화(2016~2017) - 성희롱 조사 및 구제 매뉴얼 개발·배포(2015~2017)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 정차경제 등 공적영역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3개년)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등(방송, 언론광고 등) 성차별 모니터링(2017)
	4. 이주민·재외동 포 인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3개년)
		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3개년)
		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3개년)
		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3개년)
		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2016~2017)
	5. 인권사각지대 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 (3개년)
		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 아동, 노인, 노숙인, 갱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증가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의 자주적 권리실현 보장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적응과 치료적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제에 대한 조사와 개선안 마련
		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 긴급구제업무 강화, 인권현장 모니터링 및 인권지킴이 활동 제도적 기반 마련
		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정권 보장 및 강화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성방안 마련(2015) - 소원수리제도, 전공사상 보상체계 개선 등

인 권 가 치 의 사 회 적 확 산 [Ⅲ]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 - 인권사무소의 신설 확대 추진 · 강원인권사무소 등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2016·2017·2018년 소요정원 요구안 협의(3개년) - 인권사무소의 조사범위 및 기능 확대 추진 · 인권사무소 기능 강화방안 검토(2014 하반기 ~ 2015 상반기) · 인권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진정사건 등 조사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인권사무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3개년) · 인권사무소 1차 기능강화(2015 하반기) 및 2차 기능강화 방안 마련(2017) - 찾아가는 인권상담·교육홍보 활성화 등 접근취약지역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강화(3개년)
		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3개년) - 인권전시관(체험관)의 기능 강화: 인권체험, 교육, 전시문화, 자료실 등의 복합적인 인권문화공간으로 강화 - 지역 인권교육센터 개소: 인권교육 강사양성 센터 및 인권교육시설로써의 기능 - 지역 인권자료실 운영: 위원회 발간 자료 등 인권관련 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수행. 체험관, 인권교육센터, 인권사무소 배움터 등과 동시 운영 -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 강화: 찾아가는 인권문화전시 활성화, SNS활용·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의제 개발, 토론의 장 마련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3개년) - 지자체 인권조례제정 등 인권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 - 지자체, 공공기관, 인권시민단체 등 인권정책협의체 혹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 인권문화 조성 지원: 지자체 인권위원회, 인권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 인권교육 기회 확대, 인권박람회 개최, 시민참여 인권 의제 발굴 및 인권 모니터링 활동 등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 입법과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 지지노력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3개년) -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 조직에 반영 노력 -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강화 - 4개 인권사무소별로 지역 인권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운영 및 MOU 강화(3개년) - 인권교육 포럼(연구회) 구축 및 정례적 운영 - MOU 체결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등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3개년)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교과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를 추진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으로 인권교육 발전방향 제시(2015)

		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이행(3개년) - 기본계획 수립·홍보, 언론분야 콘텐츠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 등 추진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3개년) - 텍스트 개발(연구용역)→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교재 출판과정을 거쳐 (3년 주기)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과 언론, 아동청소년 인권, 정보와 인권, 아동과 인권 등 발간
		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만화 등의 콘텐츠 개발 추진(3개년)
		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3개년)
		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3개년) -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와 인권, 아동·청소년의 인권,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과 언론, 아동청소년 인권, 정보와 인권 등)
		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2015) - 영유아 인권교육 강화 - 언론분야 인권교육협의체계 마련
		신규 과정개발(2015) - 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
		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3개년) - 2017년 연간 10만 여명 대상 교육운영 목표
		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3개년)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모전 등 기존의 활동을 인권 캠페인과 연계하여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킴
		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3개년) -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블로그의 이용자 확대를 통한 SNS의 안정적 활용 -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활동 확대 - 비용 대비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뉴미디어 매체 발굴
		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3개년) - 문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에 현지 시민단체 등 영화 상영이 가능한 곳과의 연계를 통해 작은 영화 상영회를 수시 진행하여 인권 관련 영화를 소개하고 상영하는 프로그램 진행 - 인권잡지 발행부수 증가를 통한 배포 확대 - 결정례 등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확대 및 활용 - 인권만화 추가 발행 및 신규 콘텐츠 제작 검토 -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인권의 공백화와 협력 강화 [IV]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3개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 정부 수용 추진(3개년) - ILO 등 국제노동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노동관련 권고의 이행문제(3개년)
		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3개년) -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배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문제에 대한 개선권고 준비(3개년)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3개년)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을 통한 주요 이슈 분석 및 안건 발굴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개선권고 - 기업인권 관련 사회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기업의 인권경영에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 인권경영포럼 및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등의 지속적인 개최 - 인권경영 선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MOU 체결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 ICC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OECD 책임경영포럼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이슈의 국내전파
	3. 고도정보사회 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2015) -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구성 및 정책보고서 발간
		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등의 관행 개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심의제도 개선 권고 이행 평가
		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사물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구축
		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2015) - 부안, 밀양, 강정, 경주, 4대강 개발 관련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2016) - 국책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내용적 기본권 보장 제도마련 (2017)
		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 - 재난 시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지침 마련(2015) - 해외 재난대응 시스템 연구 분석(2017) -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각 분야에 있어 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 (2015~2017) - 재난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정책 개선 방안 마련(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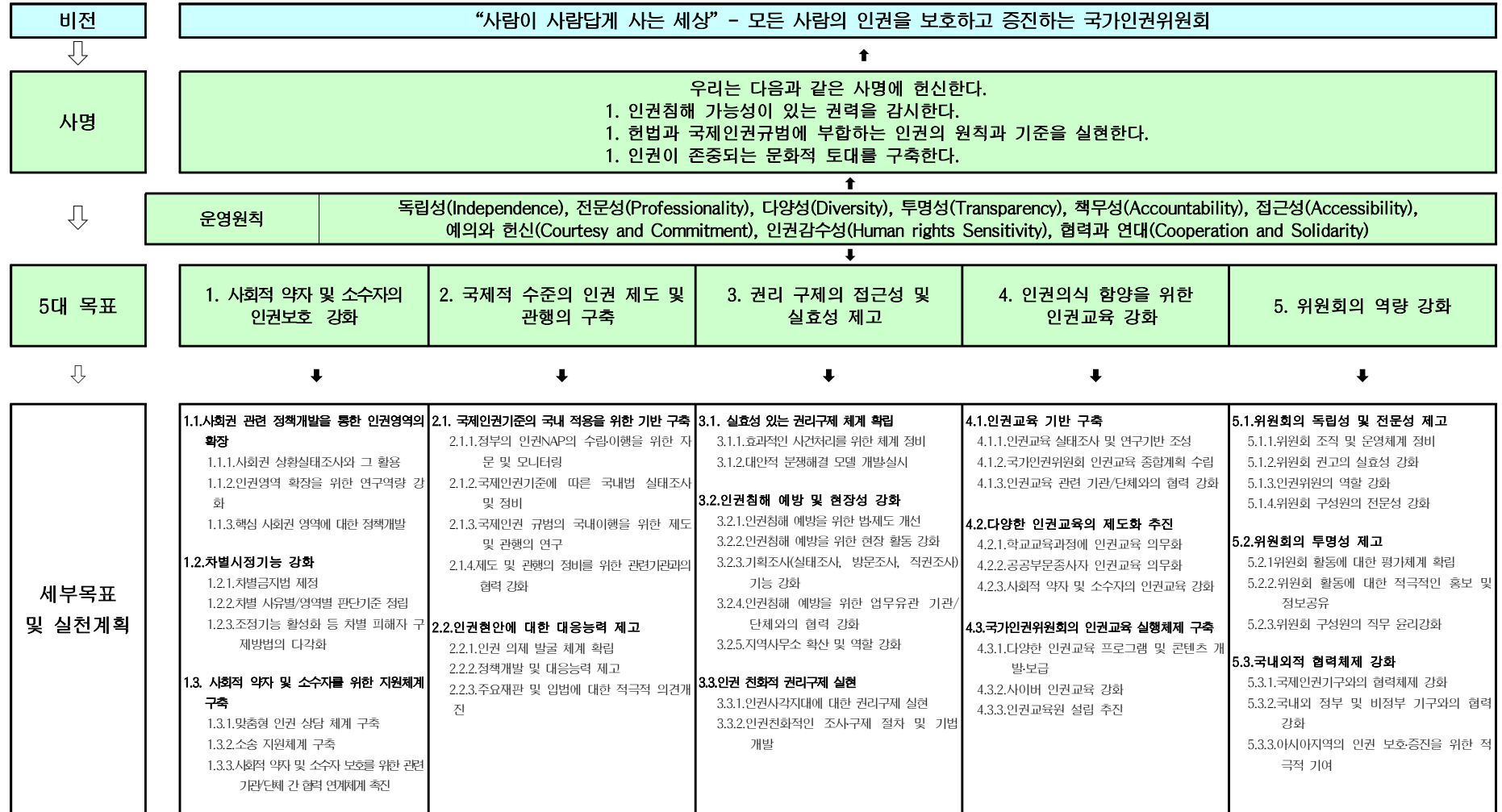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 - 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 변형 및 개발, 난자채취, 장기이식 불법매매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권 향유 격차와 차별 해소	
	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	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 -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3개년) ·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평가와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정책협의 정례화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인권단체 참여기회 제공 및 의견수렴 -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 인권포럼 개최(3개년) · 인권활동가들의 전문성 제고와 주요 인권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회 제공 · 지역 사무소단위의 활동가 지원프로그램과 병행 -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인 강원 및 제주지역 등의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3개년) · 인권관련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상담, 교육프로그램, 간담회 등 위원회 사업의 우선 배치를 통해 위원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도모
		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 유엔, ICC, APF의 연례회의 및 기타 정례회의의 참가 시 위원회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와 홍보를 통해 국제무대의 의제선정(agenda-setting) 과정에 동참 - ‘기업과 인권’, ‘북한 인권’, ‘정보 인권’ 등 주요 인권 이슈와 관련 있는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를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 연 1회 ODA 초청연수 운영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 국제심포지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확산 - 각종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기록, 관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3개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실태파악 -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권고 -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 강화(3개년) -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무로서 관련 부처에 해결방안 촉구(권고·의견표명 등) -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방안 마련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 북한인권 상설 기록보존소 설치 및 운영 추진(3개년)

기 획 사 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TF 구성(2015) - 분야별 집필진 및 외부 자문단 구성, 15년사 체계 구성 협의 및 기초 자료 취합
		15년사 분야별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감수(2015 하반기~2016 상반기) - 인권 분야별 기초 자료 검증 및 원고 집필, 외부 자문위원 등 감수
		15년사 발간 및 배포·후속조치(2016) -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배포 및 토론회 개최

☐ 추진기반(일반과제):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부록 1>

□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 비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사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 목표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사형제 폐지 입법화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3.(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강화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3.(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보호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기획 사업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②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③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표)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성과 목표	1. 사회권의 확대 · 증진 2. 자유권의 보장 · 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 · 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 적 문화 조성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 · 학력 등으로 인한 차 별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부록 2>

제4기 인권증진계획추진단 명단

구분	성명	경 력	비고
단장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 (2)	한태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자문위원 (15)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신혜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 前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천주교 서울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박수택	SBS 보도국 논설위원, 전 환경기자협회 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NGO) 전 인권위 차별금지법제정TF 자문위원	
	유동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노인인권정책기획단 자문위원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학회 이사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이사, 사회학박사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위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위원	
	이창범	정보인권포럼 위원, 한국법률문화원 원장,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구분	성명	경 력	비고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	
	구정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실무추진단 (15)	김성준 (팀장)	기획조정관	
	이석준	인권정책과장	
	안성율	침해조사과장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장	
	조형석	법제개선팀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김현철	국제인권팀장	
	정의석	홍보협력과	
	김향규	교육운영팀장	
	박광우	조사총괄과	
	이수연	여성인권팀장	
	최 진	이주인권팀	
	최낙영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손두진	장애차별조사2과	
	신홍주	인권상담센터	
간사 (2)	류인덕	기획재정담당관	
	정상영	기획총괄팀장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2(종합)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추진일정 (예시)	1.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1.1.1.언론 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1.1.2.피의자 체포구속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 보장(2016-2017) 1.1.3.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1.1.4.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2015-2016) 1.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1.2.1.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1.2.2.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1.2.3.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1.3.1.제1·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1.3.2.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2015-2016 상) 1.3.3.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2017) 1.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1.4.1.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사회권협약 2016, 여성차별철폐협약 2017,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아동권리협약 재권고 사항 등) 1.4.2.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1.4.3.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2016) 1.4.4.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1.5. 인권평가제도 도입 1.5.1.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3개년) 1.5.2.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 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3개년)	2.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1.1.아동복지시설, 빈곤가족 비혼부·모 등 취약분야 아동 인권개선(3개년) 2.1.2.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2015) 2.1.3.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17) 2.1.4.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3개년) 2.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2.2.1.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 보장 강화(3개년) 2.2.2.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3개년) 2.2.3.장애 유형별 접근권 강화(3개년) 2.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2.3.1.인권사각지대 여성의 인권보장 및 증진(3개년) 2.3.2.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3개년) 2.3.3.성차별 모니터링 강화(3개년) 2.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2.4.1.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정책 개선(3개년) 2.4.2.결혼 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인권증진 제도 개선(3개년) 2.4.3.이주아동 발달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3개년) 2.4.4.난민,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자의 생활권 보장 강화(3개년) 2.4.5.재외동포 인권증진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3개년) 2.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2.5.1.군,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직권조사 강화(3개년) 2.5.2.시설생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강화(2016) 2.5.3.인권현안에 대한 현장대응 및 차별영역 기획조사 강화(3개년) 2.5.4.인권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활성화(3개년) 2.5.5.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 방안 마련(2015)	3.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3.1.1.지역주민 접근성 향상 및 균등한 인권서비스 제공(3개년) 3.1.2.지역밀착형 인권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준중문화 확산(3개년) 3.1.3.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3개년) 3.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3.2.1.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2015) 3.2.2.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활성화(3개년) 3.2.3.인권교육 정책기능을 위한 포럼 운영 및 MOU 강화(3개년) 3.2.4.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2015) 3.2.5.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19)의 이행(3개년) 3.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3.3.1.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권교육 표준 교안의 확대(언론, 아동청소년, 정보 인권 분야 등 추가 개발) 3.3.2.국민이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특성화된 인권콘텐츠 개발 추진(3개년) 3.3.3.인권교육 실천사례 모집·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추진(3개년) 3.3.4.인권교육 대중화를 위한 사이버 콘텐츠 개발·보급(3개년)(사회복지, 지방자치, 정보, 아동청소년 등 7개 분야) 3.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3.4.1.성장단계별, 분야별 인권교육운영 체계 마련(2015)(영유아 인권교육 강화, 언론분야 인권교육협의체 마련) 3.4.2.신규 과정보발(지방의원 리더과정, 인권치료과정 등)(2015) 3.4.3.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사이버 인권교육의 확대(3개년) 3.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3.5.1.국민참여형 인권활동 강화(2015) 3.5.2.SNS 등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구축(2016) 3.5.3.영화, 잡지 보급 및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확대(3개년)	4.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4.1.1.간접고용 근로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처우개선(3개년) 4.1.2.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내용 정부 수용 추진(3개년) 4.1.3.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3개년) 4.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4.2.1.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3개년) 4.2.2.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3개년) 4.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3.1.과도하게 실명을 요구하는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2015) 4.3.2.채용 및 고용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증진(2016) 4.3.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자율정책의 확산(2017) 4.3.4.개인정보 수집 및 통합·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3개년) 4.3.5.지식 정보 접근권 및 정보기기의 활용권 보장(2016) 4.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4.4.1.국책사업 수행 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3개년)(개발사업 추진 관련 환경권, 주민참여 보장 방안) 4.4.2.안전할 권리 보장 및 증진방안 연구(3개년) 4.4.3.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 존중 방안 연구(2016-2017)(의료자기결정권, 유전자관리, 난자채취, 장기이식·매매 등) 4.4.4.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2017)(지역 및 계층 간 격차해소, 접근성 확대 및 다양성 보장) 4.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4.5.1.국내 인권시민단체 정책협의 정례화 등 협력 강화(3개년) 4.5.2.유엔, ICC, APF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3개년) 4.5.3.공적개발원조(ODA) 참여 영역 발굴 및 강화(3개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현안 활동 강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협력(3개년)			
기획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2015-2016)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